

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0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1,000원”을 “3,000원”으로 한다

부

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례)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1일 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0조(세율)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개인</p> <p>가. 군내의 주소를 둔 개인 : <u>1,000원</u></p> <p>나. “생략”</p> <p>2. “생략”</p>	<p>제20조(세율) ① ----- -----.</p> <p>1. 개인</p> <p>가.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: <u>3,000원</u>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